

의안번호	제 237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허창원 의원 등 31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3일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3일

발 의 자 : 허창원, 전원표, 송미애,
연철흙, 이옥규, 정상교,
김기창, 김영주, 박문희,
박병진, 박상돈, 박성원,
박우양, 박형용, 서동학,
심기보, 연종석, 오영탁,
육미선, 윤남진, 이상식,
이상욱, 이상정, 이수완,
이숙애, 이의영, 임영은,
장선배, 최경천, 하유정,
황규철

1. 제정 이유

-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전범기업을 비호하며 우리나라에 경제전쟁 포고를 함에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
(안 제3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문화조성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라. 입법예고 : 2019. 8. 6. ~ 2019. 8. 11.(5일간)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을 강제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2.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3.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② 국제입찰에 의할 경우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시·군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도 내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문화조성 등)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발표 전범기업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자문위원회 조사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	고차크교통(주)	31	코마츠제작소계열사-
2	(주)교산제작소	32	고마쓰산기
3	(주)구리모토철공소	33	고마쓰NTC
4	(주)나무라조선소	34	KELK(주)
5	(주)단노구미	35	고쿠산전기(주)
6	(주)미라주건설	36	교와핫코기린(주)
7	(주)미야지셀비지	37	구라바야시상선(주)
8	(주)사가미구미	38	구라시에홀딩스(주)
9	(주)오바야시구미	39	구로사키하리마(주)
10	(주)오카베철공소	40	구사카베건설(주)
11	(주)요도시	41	군제(주)-의류전문기업.특히속옷!
12	(주)후지코시	42	나나오해륙운송(주)
13	JFE계열사	43	나오쓰해륙운송(주)
14	JFE미네랄(주)	44	나이가이(주)
15	JFE스틸(주)	45	나프테스코(주)
16	JFE엔지니어링(주)	46	노무라흥산(주)
17	NS유나이티드해운(주)	47	니가타조선(주)
18	가네마쓰닛산농림(주)	48	니시마스건설(주)
19	가스가광산(주)	49	니혼가단(주)
20	가와사미기선(주)	50	니혼건철(주)
21	가와사키계열사	51	니혼경금속(주)
22	가와사키운송(주)	52	니혼고주파공업(주)
23	가와사키중공업(주)	53	니혼무선(주)
24	가지마건설(주)	54	니혼수산(주)
25	가타야마빈라공업(주)	55	니혼야마무라유리(주)
26	가타쿠라공업(주)	56	니혼우편선(주)
27	간사이기선(주)	57	니혼유리(주)
28	간토전화공업(주)	58	니혼제지(주)
29	고기(주)	59	니혼조달(주)
30	고도제철(주)	60	니혼주조(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61	니혼중화학공업(주)	91	도나미홀딩스(주)
62	니혼차량제조(주)	92	도다건설(주)
63	니혼철판(주)	93	도비시마건설(주)
64	니혼카바이트공업(주)	94	도아건설공업(주)
65	니혼카본(주)	95	도와홀딩스(주)
66	니혼통운(주)	96	도요그룹계열[3]
67	니혼화학(주)	97	도요강판(주)
68	니혼흙(주)	98	도요방적(주)
69	니혼흙(주)	99	마쓰다주식회사[4]
70	닛산화학공업(주)-	100	도이마린관광(주)
71	닛신제강(주)	101	도치기기선(주)
72	닛테쓰광업(주)-	102	도카이고무공업(주)
73	다마이상선(주)	103	도카이기선(주)
74	다부치전기(주)	104	도카이카본(주)
75	다쓰타방적(주)	105	도쿄가스(주)
76	다오카화학공업(주)	106	도쿄아사이토방적(주)
77	다이도특수강(주)	107	도쿄제강(주)
78	다이도화학공업(주)	108	도쿄제철(주)
79	다이세이건설(주)	109	도쿄차량제조(주)-현JR히가시니혼종합차량 제작소
80	다이하홀딩스(주)-가정용기자재주력	110	도피공업(주)
81	다이요니혼기선(주)	111	도호그룹계열사
82	다이이치주오기선(주)	112	도호가스(주)
83	다이킨공업(주)-에어컨이주력	113	도호아연(주)
84	다이헤이요시멘트(주)	114	라사공업(주)
85	다이헤이요흥발(주)(주)	115	리코엘레믹스(주)
86	다치히기업(주)	116	린카이닛산건설(주)
87	데이카(주)	117	린화학공업(주)
88	데이코쿠섬유(주)	118	마부치건설(주)
89	데이코쿠요업(주)	119	메이지해운(주)
90	뎃켄건설(주)	120	모리나가제과(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21	모지향운(주)	151	산요특수제강(주)
122	묘쥬시멘트(주)	152	산코기선(주)
123	무카이시마독(주)	153	산큐(주)
124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154	산키회업(주)
125	미쓰비시그룹계열사-	155	쇼와KDE(주)
126	미쓰비시금속(주)	156	쇼와비행기공업(주)
127	미쓰비시상사(주)	157	쇼와산업(주)
128	미쓰비시신동(주)	158	쇼와전공(주)[6]
129	미쓰비시전기(주)	159	쇼와철공(주)
130	미쓰비시제강(주)	160	스가와라검설(주)
131	미쓰비시중공업(주)	161	스미세키홀딩스(주)
132	미쓰비시창고(주)	162	스미토모그룹계열사-금융등일부계열사는미쓰이그룹계열사와합병.
133	미쓰비시화학(주)	163	스미토모강관(주)
134	Nikon(주)-	164	스미토모고무공업(주)
135	미쓰이금속공업(주)	165	스미토모금속공업(주)-현재는신일본제철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36	미쓰이농림(주)	166	스미토모금속광산(주)
137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167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138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168	스미토모전기공업(주)
139	미쓰이조선(주)	169	스미토모화학(주)
140	미쓰이화학(주)	170	(주)스미토모금속소창-신일본제철과합병. 현재는신일철주금.
141	(주)도쿄시바우라	171	스즈요(주)
142	도시바기계(주)	172	시나가와리플렉토리즈(주)
143	이비덴(주)	173	시미즈건설(주)
144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174	시미즈해운(주)
145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175	신니혼제철(주)-스미토모금속공업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46	빈고통운(주)	176	신니혼카이중공업(주)
147	사노야건설(주)	177	신메이공업(주)
148	사와라이즈	178	신에쓰화학공업(주)
149	사토공업	179	쓰루가해륙운송(주)
150	산덴교통(주)	180	쓰루미(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81	아라이건설(주)	211	이와타지자키건설(주)
182	아사히유리(주)	212	일본건류공업(주)
183	아사히카세(주)	213	전기화학공업(주)
184	아소시멘트(주)	214	제이와이텍스(주)
185	아이사와공업(주)	215	제팬빅터컴퍼니(주)
186	아이치기계공업(주)	216	조반흥산(주)
187	아이치시계전기(주)	217	(주)가나자키구미
188	아이치제강(주)-도요타그룹계열사	218	(주)가미쓰제작소
189	아즈마해운(주)	219	주가이광업(주)
190	아지노모토(주)	220	(주)고노이케구미
191	아키타해륙운송(주)	221	(주)고베제강소
192	야마분유화(주)	222	(주)고이케구미
193	야마하-	223	주고쿠도료(주)
194	야바시공업(주)	224	주고쿠전력(주)
195	양마(주)	225	(주)구라레
196	오사카가스(주)	226	(주)구마가이구미
197	오사카기선(주)	227	(주)나카야마제작소
198	오사카제강(주)	228	(주)노가미
199	오지제지(주)	229	(주)니치로
200	와코도(주)	230	(주)니치린
201	요시자와석회공업(주)	231	(주)니혼제강소
202	요코하마고무(주)	232	(주)닛치스
203	우베금속(주)	233	(주)다이세루
204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234	(주)다이조
205	우베흥산(주)	235	(주)다이헤이제작소
206	이노향운(주)	236	(주)다케나카공무점
207	이노해운(주)	237	(주)도쿠야마
208	이스즈자동차	238	(주)리갈코포레이션
209	이시다(주)	239	(주)링코코포레이션
210	이시하라산업(주)	240	(주)마루하니치로수산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241	(주)마쓰무라구미	271	한신내연기공업(주)
242	(주)미쿠니	272	호도가야화학공업(주)
243	(주)사쿠션가스	273	호쿠에쓰메탈(주)
244	(주)세이사	274	훗카이도탄광기선(주)
245	(주)세이탄	275	후루가와기계금속(주)
246	(주)신가사독	276	후루가와전기공업(주)
247	(주)아시텍이리에	277	후시키해륙운송(주)
248	(주)야노철공소	278	후지보홀딩(주)
249	주에쓰전기공업(주)	279	후지전기(주)
250	(주)오에무방기제작소	280	후지중공업(주)-
251	(주)오에무제작소	281	히노데우편선(주)
252	주오전기공업(주)	282	히라니시키건설(주)
253	(주)요도가와제강소	283	히로시마가스(주)
254	(주)요타이	284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255	(주)이케가이		
256	(주)자판에너지		
257	(주)제니타카구미		
258	(주)후지타		
259	(주)히타치제작소계열사-		
260	히타치조선(주)		
261	히타치조선(주)		
262	히타치항공기(주)		
263	카미오카공업(주)		
264	카본(주)		
265	파나소닉(주)-		
266	풀추		
267	하기모리흥산(주)		
268	하자마구미(주)		
269	하카타항운(주)		
270	하코다테독(주)		

관련법령 발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 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

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8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자오간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 2) 대상금액 :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 나)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3억 원 이상)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